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62484 판결 [보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 종결 2017. 4. 21.

판결 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80,32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183,561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을 한다.

2) 피고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 등을 한다.

나. 원고의 자금대여 및 피고의 신용보증

1) 2011. 5. 26.자 여신거래약정 가) 원고는 2011. 5. 26. 아침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아침농산'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여신약정'이라 한다)

여신(한도)금액	3억 6,000만 원	이자율지연배상금율	연 1%연 0%연 12%
여신내역	여신분야	이자율	여신(한도)금액
2011년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연 1%	6,000만 원	
2011년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연 0%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4. 5. 30.		
여신실행방법	여신실행일에 전액 실행한다.		

나) 원고는 여신금액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융자원장번호 2011-00688로, 여신금액 3억 원에 대해서는 융자원장번호 2011-00689로 구분하여 융자원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아침농산과 보증금액 2억 8,800만 원, 보증기간 2011. 5. 30.부터 2014. 5. 30.까지, 채권자 원고, 대출예정금액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5. 30. "피보증인 : 아침농산, 보증금액 : 2억 8,800만 원, 보증기간 : 대출일로부터 3년, 대출과목 : 기타대출금(정책자금), 용도(자금구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원료매취자금(운전자금), 대출 예정금액 : 3억 6,000만 원, 보증비율 :

80%"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700-16-0000426, 이하 '제1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31. 아침농산의 계좌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4. 5. 27.자 여신거래약정 가) 원고와 아침농산은 제1 여신약정의 기한이 만료될 무렵 신규대출 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방식으로 제1 여신약정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여, 원고는 2014. 5. 27. 아침농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여신약정'이라 한다).

여신(한도)금액	3억 6,000만 원	이자율지연배상금율	연 1%연 12%
여신내역	여신분야	이자율	여신(한도)금액
2014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연 1%	3억 6,0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7. 5. 30.		
여신실행방법	여신실행일에 전액 실행한다.		

나) 원고와 아침농산은 제1 여신약정과 달리 제2 여신약정에서는 6,000만 원과 3억 원을 구분하지 않고 여신금액 3억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이자율을 연 1%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융자원장(원장번호 2014-00416)도 하나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8. 아침농산과 보증금액 2억 8,800만 원, 보증기간 2014. 5. 30.부터 2017. 5. 30.까지, 채권자 원고, 대출예정금액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27. "피보증인 아침농산, 보증금액 2억 8,800만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 대출과목 : 기타대출금(정책자금), 용도(자금구분):

산지유통활성화자금(운전자금), 대출 예정금액 3억 6,000만 원, 보증비율 80%, 특약사항 : 기 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 승인, 본 보증서는 구보증(보증번호 700160000426, 금액 288,000,000)의 대환을 위한 보증입니다."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700-16-0000611, 이하 '제2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 아침농산과 제2 여신약정에 따른 여신금액 3억 6,000만 원의 이자율을 당초 연 1%에서 연 2%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대손판정신청 및 그 결과

1) 원고는 아침농산이 2016. 1. 1.부터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6. 3. 16. 피고에게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액 2억 8,800만 원에 대하여 대손판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상의 보증금액과 보증부채무 실행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출금 3억 6,000만 원 중 먼저 실행된 대출금 6,000만 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여 48,199,890원[=보증금액 4,800만 원(=6,000만 원 × 보증비율 80%) + 이자 199,890원]만 대위변제금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실행된 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240,999,452원[=보증금액 2억 4,000만 원(=3억 원 × 보증비율 80%) + 이자 999,452원]은 면책된다는 내용의 대손판정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위 대손판정결과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관련 규정

○ 신용보증약관

제1조(정의)

1. "관리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지역보증센터, 권역보증센터를 말합니다.

5. "보증부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관리기관과 채권자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관리기관 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합니다.

12. "대손판정"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채권자에 대한 보증부채무액의 대손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①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보증부채무 발생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증부채무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 이하로 실행된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실행된 보증부채무액에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10조(보증채무의 이행)

③ 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 합계액 이내로 합니다.

1. 보증부채무의 미회수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회수이자액

제14조(면책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 및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면책범위)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에 의합니다.

○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

1.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과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가. 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을 위반하여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였을 때2) 보증서상의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과 보증부채무의 실행 금액이 다른 경우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을 초과한 채무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동 종속채무	보증서상의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 이하로 보증부채무를 실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에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자동 축소됨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보증부채무의 미회수원금 3억 원 × 보증비율 80%),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회수이자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원고의 자금대여 내지 피고의 신용보증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할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산물 등의 수급 안정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지 이를 가리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며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한다 하여도 피고를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1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신용보증서상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은 3억 6,000만 원인데 실제 실행된 보증부채무는 6,000만 원이므로, 피고의 보증금액은 위 6,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액으로 자동 축소되고(신용보증약관 제2조 제2항), 위 6,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에 대한 보증금액 및 그 종속채무는 면책된다[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1호,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 면책항목 1. 가. 2)]. 원고는 하나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금 3억 6,000만 원이 동시에 실행되었으므로 보증서상의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과 보증부채무의 실행금액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6,000만 원과 3억 원은 이자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융자원장도 번호를 달리하여 2장으로 작성·관리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하나의 대출이 아니라 두 개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융자원장번호가 앞선 6,000만 원을 먼저 실행한 대출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서상의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3억 6,000만 원)과 보증부채무의 실행 금액(6,000만 원)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먼저 실행된 6,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면책되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1 여신약정에 따라 6,000만 원에 대한 융자원장(원장번호 2011-00688) 및 3억 원에 대한 융자원장(원장번호 2011-00689)을 구분하여 작성한 사실, 제1 여신약정상 6,000만 원과 3억 원의 이자율이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 5, 9, 10,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26. 아침농산과 대출금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한 하나의 제1 여신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약정서상으로도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의 이자율, 3억 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대출을 실행함을 명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6,000만 원과 3억 원에 대해 이자율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이자 납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융자원장만 2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을 뿐 위 두 금액의 여신과목, 여신분야, 지연배상금율, 여신기간만료일 등은 모두 동일한 사실, 원고는 2011. 5. 31. 제1 여신약정에 따라 대출금 3억 6,000만 원을 아침농산의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하였고, 그 즉시 피고에게도 "전체 대출금 3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연 1%의 금리를 적용하고, 3억 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증부대출 실행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5. 27. 아침농산과 대환의 방식으로 제2 여신약정을 체결하면서 6,000만 원과 3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을 달리 정하지 않고 3억 6,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1%로 정하였고, 융자원장도 1개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아침농산에 3억 6,000만 원의 하나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6,000만 원과 3억 원의 이자율이 다르다거나 융자원장이 분리 작성·관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침농산에 6,000만 원과 3억 원의 2개의 대출을 분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발급한 제1, 2 신용보증서상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은 3억 6,000만 원이고, 위 금액과 원고가 아침농산에 대출을 실행한 3억 6,000만 원은 동일하므로, 피고는 대출금 6,000만 원에 대한 보증책임 외에 나머지 대출금 3억 원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241,180,327원[=보증금액 2억 4,000만 원(=보증부채무의 미회수원금 3억 원 × 보증비율 80%) + 미회수이자액 1,180,327원(=2억 4,000만 원 × 이자율 연 2% × 90일/366일(아침농산의 이자 미지급일 2016. 1. 1. ~ 피고의 보증금액 이행거절일 2016. 3.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1)]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보증서상의 보증부채무발생예정금액과 보증부채무의 실행 금액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이고은

판사송인석

1) 원고는 2016년을 365일로 보아 이자를 1,183,561원[=2억 4,000만원 × 연 2% × 90일/365일(2016. 1. 1. ~ 2016. 3. 30.)]으로 계산하였으나, 2016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어 366일이고, 그에 기해 이자를 계산하면 1,180,327원[=2억 4,000만 원 × 연 2% × 90일/366일(2016. 1. 1. ~ 2016. 3. 30.)]이 된다.